

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
신청자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화번호/Fax	
	영업장 소재지		

「주택법」 제41조의2제2항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0조의9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